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7일, 우재준의원 등 16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9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11.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
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5.2.18.)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2.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우재준의원)

기후위기 시대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의 육성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 녹색산업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문공사업·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수정하며,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1) 환경기술의 정의 개념 확대 등(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안 제2조제1호는 “환경기술”의 정의에 기후변화대응 기술,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술 등을 추가하고, 전반적인 조문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환경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기술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환경기술 정의 개정에 따른 범위 비교]

현행	개정안
자정능력의 향상, 피해유발요인 억제, 환경오염 사전 예방·감소, 오염·훼손된 환경 복원, 환경 보전·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	다음 각목의 기술이나 이를 응용·활용하는 기술
가 환경오염물질 감소·처리	가 환경오염예방·저감·관리·처리·감시·측정·분석

	소음·진동 방지
나	환경오염 예방·감소
	오염 유발 억제 제품
	재활용·회수
다	자연환경 보전·복원·개선
	환경위해성평가 및 관리
	환경영향평가
라	환경오염물질, 소음·진동 측정·분석
마	상수도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바	실용화(응용·활용)

	빛공해(환경정책기본법)
나	자연환경의 보전
다	생물자원 지속가능 이용(생물다양성법)
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기술법)
마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 억제(순환경제사회법)
바	수질·수생태 수량(홍수 방지, 가뭄 예측 등)(물산업진흥법)
사	유해화학물질 관리(화학물질관리법)
아	대통령령

* : 추가된 범위

※ 출처: 환경부

안 제2조제3호는 “환경산업”의 범위에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재료와 제품을 생산·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추가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산업의 범위를 환경기술과 연계하여 규정하려는 취지임.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에 따른 경우 해당 산업의 일부 공정에 환경기술을 활용한 경우(공장에 집진기를 설치한 제조업자, 축사에 악취저감설비를 설치한 축산업자 등)도 환경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환경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환경산업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안 제3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에 관하여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는 동 법률의 법적 지위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법률이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한 「환경정책기본법」을 구체화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이라는 특정

한 분야의 진흥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

(2)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등)

안 제6조는 환경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확대, 보증지원 사업 및 모태조합 등에 대한 출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산업 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실제로, 환경부는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을 통하여 펀드관리기관(한국벤처투자)의 ‘한국모태펀드’ 계정에 출자하고 있으며, 2025년에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녹색전환보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임¹⁾.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은 각각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및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환경부가 수행 중인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은 지원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 제7조의6은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의 대상을 우수환경산업체로 명시하고 있음²⁾.

1) 참고자료 1. 개정 조항 관련 사업 개요

안 제7조의6은 우수환경산업체 지원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안 제13조의4제1항제4호는 현행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 현지 사무소 건립 지원”에 대한 사항을 이동하여 규정하면서, 실제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해외 사무소 운영에 대한 지원’ 사업³⁾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4제1항제6호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해외 수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환경산업체의 수출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환경산업협회,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관련 규정 정비 등(안 제11조 및 제15조 등)

안 제11조는 환경산업협회의 회원이 환경전문공사업자, 환경컨설팅회사 및 환경 관련 기업 등으로 구성⁴⁾되어 있고, 환경산업협회는 환경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사업을 통하여 ‘해외 현지사무소 운영’사업(2024년 예산 19억 5,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가나)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운영)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의5(환경산업협회의 설립)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관련 민관협력 추진·해외 진출 지원⁵⁾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환경산업협회의 실제 회원 구성 및 수행 업무를 고려하여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취지임.

안 제15조는 환경전문공사업자 중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유예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인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안 제15조의2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영업정지 사유인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중대한 법령 위반이 아닌 비교적 고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 중지 등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2.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건설팅회사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5.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기업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 5) 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환경산업협회가 환경산업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2024년 예산 8억원)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임.

것으로 보임.

다만,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는 영업정지를 할 경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금전적 제재로 대신하려는 것이므로,

환경전문공사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환경오염 예방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 요건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사업법례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안 제16조의4는 비영리법인이 실제 환경컨설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상법」상 회사가 아니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이 불가함에 따라 현행법 제16조의5⁷⁾에 따른 지원(정보제공 및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법」상 회사가 아닌 자도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서, 제도의 저변 확대, 공익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환경컨설팅 업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15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2.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참고로, 현행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경우에도 등록 범위를 「상법」상 회사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⁸⁾.

안 제16조의6은 안 제16조의4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대상이 확대되므로,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사후관리 대상 추가 및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 등(안 제28조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안 제28조는 정부로부터 창업자금이나 사업화 자금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환경산업체 등에 대하여 업무 처리현황 보고, 정부출연금 등의 사용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용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31조는 현행법이 환경부장관의 업무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업무 위탁사항 추가·변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업무위탁 규정을 개선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환경정책기본법」 등 주요 환경 관련 법률⁹⁾에서도 환경부

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 「환경정책기본법」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장관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